

대구지방법원 2023. 7. 6 선고 2022가단12243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경(소송구조)

변 론 종 결 2023. 5. 11.

판 결 선 고 2023. 7. 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대구 북구 C 대 53.9㎡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7938분의 318에 관하여,
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19. 11. 5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9. 11. 7. 접수 제1666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주식회사 E은 D에게 2018. 8. 30. 40,000,000원을 대여하였는데, D은 2019. 4. 2.

원리금으로 1,329,208원의 입금을 마지막으로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.

나. 원고는 위 E은행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후 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

제기하였고(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12650), 2022. 3. 29. ‘D은 원고에게 43,780,739원 및 그 중 금 33,300,681원에 대하여 2022. 1. 1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받았으며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다. 이 사건 부동산은 F의 소유였다. F에게는 피고를 포함한 7명의 자녀가 있었고, 2019년 당시에는 G, H, I, 피고 등 4명만이 생존해 있었다. D은 망 F의 아들인 망 J의 아들이다. F가 1976. 12. 12.

사망한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9. 10. 16. D 등 상속인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. 11. 7. 그 중 D 지분(7938분의 318)에 관하여 2019. 11. 5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(이하 2019. 11. 5.자 증여계약을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하고,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그 지분권이전등기를 ‘이 사건 등기’라 한다) 피고는 D의 작은아버지이다.

[인정 근거] 갑 제1, 3호증, 을 제3,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

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친족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. 따라서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

피고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등 생계를 이어나가기에 어려움이 컸고, 자신을 부양할 자녀들이 없어 다른 형제자매들이 피고를 안쓰러이 여기고 있던 중 피고의 형제자매를 비롯한 상속인들은

피고가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D이 동참하여 이 사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피고는 D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도 몰랐고, 원고를 해할 의사도 없었다.

다. 판단

(1)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,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,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,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다37504 판결 등 참조).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,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1. 5. 8. 선고 2000다50015 판결,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다52430 판결 참조).

(2) 앞서 본 사실, 갑 제4호증, 을 제2,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.

- ① F의 자녀들은 평소 시각 장애로 생계를 이어나가기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고, 이들의 뜻에 따르기 위해 D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.
- ② 평소 D과 그의 작은 아버지 사이에는 왕래가 없었으며, D이 증여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은 7938분의 318로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19년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52,229,100원(969,000 x 53.9)이고, D의 지분을 가액과 면적으로 환산하여 보면, 각각 약 209만 원, 약 2.16㎡(약 0.65평)밖에 되지 않고, 위 판결도 공시송달로 진행 되었으며, 작은아버지인 피고가 원고측의 채권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.
- ③ D과 피고가 원고측의 채권에 대해 알았다면 D은 상속포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측의 추심을

피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즉시 피고 앞으로 이전하였다.

(3)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,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남근욱